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안내문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과 관련한 서류 접수 방법을 '우편 접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건본주택 접수 불가)
- 해당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 예정자, 예비자)로 선정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하셔야 합니다.(인터넷 미청약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www.applyhome.co.kr)을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청약이 불가능한 경우만 방문접수(건본주택)도 가능합니다.
※ 단, 건본주택에서 청약신청 시 자격입증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 여부, 청약신청 및 동·호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당첨자 명단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은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I 공급개요 안내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2번지(B2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5층 ~ 최고 59층 5개동 총 1,205세대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 총 116세대
-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 : 모집공고 참조, 2020년 03월 13일(금) 예정
- 기관추천 특별공급 유형별 세대수

구분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주택형				
	84A	84B	102A	120A	계
특별공급 세대수	39	10	28	39	116
예비자	(15)	(4)	(11)	(15)	(45)

※ 괄호() 안의 수는 예비자 수

II 공급일정 안내 [예정]

구분	일정(예정)	비고
특별공급 사전접수 (우편 접수)	고시 이후 ~ 2020년 03월 02일(월) 까지	* 우편 접수 주소(등기발송 필수)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177번길 17(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건본주택) * 우편 소인 날짜 기준 : 2020년 03월 02일(월) 까지 * 해당 기간 내 서류 미제출 및 누락 시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제외
입주자모집공고	2020년 03월 13일(금)	* 홈페이지(www.hillstate.co.kr) (예정)
특별공급 접수(청약)	2020년 03월 23일(월)	*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08:00~17:30)
당첨자 동·호수 및 예비입주자 발표	2020년 03월 31일(화)	*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개별 조회
계약 체결	2020년 04월 17일(금) ~ 2020년 04월 22일(수)	* 장소 : 건본주택(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177번길 17) * 시간 : 10:00~16:00

- ※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여부를 확인 후 한국감정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을 통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해당기간 내 서류 미접수 및 서류 미비 대상자는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특별공급 사전접수와 관련한 서류일체는 해당 기간 내 우편 접수(등기)에 한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일정은 인·허가 및 업무 추진 중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신청 전 건본주택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II

특별공급 사전접수 구비서류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을 사전접수 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되는 서류와 함께 첨부하여 사업 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청약자 본인 접수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1통	재직회사	재직회사 발급(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사업자등록증 1통	재직회사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재직증명서 1통	재직회사	소속업체 인감 날인된 재직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재직기간 명시(필수)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본인	소속업체 인감 날인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년 이상 기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팩스 또는 인터넷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포함 발급)
	○		특별공급신청서	-	소속업체 인감 날인 제출(경제청 및 당사 홈페이지 고시문/안내문 참고)
	○		무주택서약서	-	경제청 및 당사 홈페이지 고시문/안내문 참고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	경제청 및 당사 홈페이지 고시문/안내문 참고
	○		청약통장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청약자	이름, 청약예치금액 및 청약통장 가입일 및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한국감정원 <청약통장 가입내역> 인쇄 / 이용시간 08:00~17:30)
		○	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추후 동점자 발생하여 사업주체 요청시 제출
		○	출입국 사실증명원	세대구성원	추후 동점자 발생하여 사업주체 요청시 제출
	○		신분증 사본	청약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		인감증명서 1통	청약자	본인발급용 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용도:주택공급신청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날인)	청약자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가능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날인 필수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 1통	배우자 (분리세대)	본인 및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		주민등록(표)초본 1통	청약자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	청약자	주민등록번호 및 세대원 전체 포함(상세 발급)

※ 상기 모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인 2020.03.13(금) 3개월 이전(2019.12.13.(금) 이후 ~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까지 발행분 (세대 구성원 변동 시 변동된 날 기준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만 접수 가능합니다.(*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함.)

※ 신청자의 착오, 미기재, 서류 위조 등의 사유로 인한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제외, 청약 신청분의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전출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는 당사 홈페이지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IV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 및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외국인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해당 기업 또는 기관에 1년 이상 종사하는 자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청약자격 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3.13.(금) 예정] 현재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대상자 자격 및 청약통장 요건을 갖추어야 함.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 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 인정금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 금액

구 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청약부금(전용 85㎡ 이상 신청시) 또는 청약저축 통장으로 청약시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 이전까지 청약예금 통장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시 기존 통장으로 재변경이 불가합니다.
- ※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 인정 등 신청자격 판단의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입니다.
- ※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전산프로그램)에서 수행합니다.
- ※ 해당 주택형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동일 주택형 내에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공급하고, 이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신청자 모두를 무작위 추첨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인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성년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의미

-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
(단,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제외)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따라 2018.12.11. 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 “분양권 등”)은 주택수에 포함 (단, 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
2.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5조에 따라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단,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5조 각호에 정하는 자는 예외로 함.)
3.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함.)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 [중전의 「건축법」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9.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V

대상자 선정 방법

■ 대상자 선정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인천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특별공급 신청서를 사업주체에 접수하고,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신청자 현황을 작성하여 접수된 특별공급 신청서와 관계서류 확인 후, 일괄하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인천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예비자) 선정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참고)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어 사업주체에 통보되며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감정원)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에 통보된 자만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청약일에 인터넷청약 하여야 합니다. (미 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포함)으로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 시 자격 적합여부를 확인 후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홈페이지에 특별공급 청약 접수일까지 게시하고 특별공급 대상자 및 탈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그 선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VI

유의사항 안내

- ‘코로나19’ 전염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공급 서류 접수는 우편 접수 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건본주택 입장 및 접수 불가)
- 해당기간 내 서류 미접수 및 서류 미비 대상자는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외 타지역 지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확인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여부 및 동·호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 금회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에 따라 일반 공급 물량이 확정되므로 각 기관에서 당 사업주체에 통보한 사항의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성명, 주민등록번호, 주택형, 추천기관명, 연락처 등)
-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7호에 해당하는 당첨자로 간주되며, 특별공급에 있어서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제반서류 중 재직회사 서류의 경우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 또는 미날인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당첨자 추첨일 이후 사업주체에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적격자로 판명된 분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청약신청 자격에 대한 심사 후, 주택소유사실 등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로서의 일체의 권리가 소멸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1,2순위) 중복 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공급 청약은 무효처리 됩니다.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서류접수는 조건에 해당하는 세대구성원 모두 접수 가능하나, 특별공급(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일반특별공급,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청약 신청은 1세대 1건만 가능하므로 중복청약 하는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되며, 중복당첨으로 인한 당첨자 명단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의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당첨 예정자, 예비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선정된 타입 외 다른 타입 청약시 당첨이 불가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하여 부양가족으로 대상자가 결정되는 경우 부양가족 수 산정방법은 「주택법」의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선정자는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신청 이후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 내용 참조)
- 신청자가 상기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19.11. 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관계법령과 상이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본 안내문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양문의 : 1600-3113